

##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완화

정길오\*

사회보장제도로서 뿐만 아니라 적극적 인력 정책으로서 고용보험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시 되기 위해서는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과 함께 실업자에 대한 적절한 생활보호가 중요하다.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통해 노동력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는 기본 전제조건인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를 통해 실업자의 생활보호와 실업기간중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노동자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에도 이익이 되는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나치게 엄격한 실업급여 요건을 완화하여 고용보험제도가 적극적 인력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18개월로 되어 있는 기준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해야 한다. 현재 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의 차는 6개월에 불과한 실정인바,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보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기간은 12개월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업의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단위

를 연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임금지급 단위는 월급계가 대부분으로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도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 단위도 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직활동이며, 실업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매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에 출석케 하는 것은 실업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의 단위기간을 '4주' 또는 '월' 단위로 하거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보상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구직급여 수준이 인상돼야 한다. 현행 실업급여의 급부 수준인 기초임금일액의 50%는 실직자의 생활보장과 원활한 구직활동에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구직급여의 최저 지급 수준을 휴업수당과 같이 평균임금의 70%로 하고 실직전의 임금 수준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고 평균임금의 100%까지 차등 지급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소정급여일수의 연장이 필요하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실직기간 동안 충분한 구직활동을 통하여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현재의 실업급여

\* 한국노총 정책본부 선임연구위원

지급일수는 실직기간 동안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고 취업을 위한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는데 불충분한 시간이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최저 60일에서 최장 300일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기기간의 단축이다. 대기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의 판단을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사무자동화 및 전산화의 진전으로 단축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퇴직금제도가 있으므로 대기기간을 길게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퇴직금제도와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로 대기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 유무에 필요한 기간일 뿐이다. 따라서 대기기간은 고용보험 전산화가 완료되는 즉시 1주일 이내로 단축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수급자격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실직자가 실업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실직의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생활안정은 실직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따라서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을 중단하지 말고 일정기간 정지시킴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실업급여의 남용을 동시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즉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이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소정급여일수의 1/3에 해당하는 일수를 소정급여일수에서 공제한 후 잔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자발적 실업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의 인정범위를 폭넓게 하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등 실업급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 건설업에서의 고용보험 적용의 문제점

유 원 희\*

### I. 서 론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업하여

그 소득의 원천을 상실한 경우에 보험제도에 의하여 일정기간 소득의 보상을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산업에 필요

\* 대우건설 인력관리부 과장